

2020년 1월 29일 개정

이사회 규정



이사회 규정

서기	1956년	7월	25일	제	정
서기	1999년	5월	1일	개	정
서기	2000년	6월	1일	개	정
서기	2000년	11월	16일	개	정
서기	2012년	12월	13일	개	정
서기	2015년	4월	21일	개	정
서기	2019년	4월	16일	개	정
서기	2020년	1월	29일	개	정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4 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 (의장)

- ① 이사회에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.
- ② 의장의 임기는 해당 이사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.
- ③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대행하되, 지정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1. 사내이사 중 상위직급자
 2. 사외이사

제 6 조 (감사의 출석)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7 조 (개최 시기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8 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 제 3 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.
-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제 1 항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9 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 3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.

제 10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3) 재무제표의 승인
- (4) 정관의 변경
- (5) 자본금의 감소
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(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(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9)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
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시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자,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자, 법규위반으로 행정적,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자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선임을 제한하도록 한다.
- (10)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- (11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(12) 현금, 주식, 현물배당 결정
- (13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4) 이사·감사의 보수

- (15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(16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7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3) 공동대표의 결정
- (4)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의 선임 및 해임
 회장 등 임원의 선임 시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자,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자, 법규위반으로 행정적,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자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선임을 제한하도록 한다.
- (5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6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(8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9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 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
- (10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11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12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(13) 기본조직의 편성 및 개폐
- (14) 신규사업의 결정
- (15)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
- (16) 대규모(자기자본의 1% 이상)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(17) 이사회 운영규정 및 위원회 운영규정(운영기준)의 개폐
- (18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
3. 재무/회계에 관한 사항

- (1) 신주의 발행
- (2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3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4) 전환사채의 발행
- (5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6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7) 자기주식의 소각
- (8) 대규모(자기자본의 1% 이상) 투자에 관한 사항
- (9) 대규모(자기자본의 1% 이상) 타법인 출자, 출자지분 처분

- (10) 결손의 처분
- (11) 대규모(자기자본의 1% 이상) 차입 및 지급보증
- (12) 대규모(자기자본의 1% 이상) 담보제공 및 대여
- (13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- (14)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정 및 개폐

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(3) 이사의 타회사 임원 겸임 또는 경업의 승인

5. 기타사항

- (1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2) 중요한 소송의 제기
- (3)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
- (4)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사항
- (5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- 3.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책정
- 4. 경영실적(월/누계) 보고
- 5. 자금수지 보고
- 6. 계열사와의 중요한 거래
- 7. 중요한 사규, 제도의 제정 및 개폐
- 8. 회사가 피고가 되는 중요한 소송
- 9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
- 10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12 조 (긴급사항)

-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에 의거 긴급 조치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3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1. 감사위원회

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 3. 기타 회사 경영에 필요한 위원회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,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,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는 사외이사가 되도록 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또는 당해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- ⑤ 위원회에 관하여는 정관 제 35 조의 2(이사회내 위원회), 제 36 조(이사회결의방법) 규정을 따르되,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정관 제 38 조의 2(감사위원회의 구성) 내지 제 39 조(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록)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
- ⑥ 제 5 항에도 불구하고,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사회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
-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.
- ⑧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 14 조 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6 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- ⑤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.

제17조 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총무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